

한 국 농 어 촌 공 사 및
농 지 관 리 기 금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2021. 10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지과)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(“21.8.30)에 따른 법령 정비,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요청·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(8.17)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하향(안 시행령 제19조의9 개정)

-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

나.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(안 시행령 제19조의10 개정)

-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 뿐만 아니라 가입자 사망 시에도 대상 농지를 공사에 매도토록 함

다. 공사가 농지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·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자료·정보의 범위를 구체화(안 시행령 제44조의2 신설)

- 농지 및 영농현황 확인, 부동산 가격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 가능토록 명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9제2항제1호 중 “65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19조의10제2항제3호 중 “종료된 후”를 “종료되거나 수급자 사망 시”로 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) ① 공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법원 등 국가기관
2. 지방자치단체
3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
4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5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
6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
7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8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

9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

10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 등

11. 그 밖에 공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한 기관

② 공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연금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에 따른 가입자 또는 적용 대상자에 관한 급여 등의 자료 및 정보

2. 농지와 영농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

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정보

나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및 정보

다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원부

라.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공유재산인 농지의 필지별 관리 현황

3. 부동산의 현황 및 가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

가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공부·부동산종합공부

나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원인별 농지 명세와 공유지분 농지 명세 등

다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·표준지공시지가·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실거래가

4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현황, 주소 등

5. 「통계법」에 따른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

6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

7.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

③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종합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

2.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취득세, 재산세, 자동차세

④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요청 자료 및 정보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9조의9(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) ① (생략)	제19조의9(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) ① (생략)	제19조의9(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,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	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,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(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연령) 이상일 것	1.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(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연령) 이상일 것	1. ----- ----- 60세 ----- ----- ----- -----		
2. (생략)	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
제19조의10(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) ① (생략)	제19조의10(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) ① (생략)	제19조의10(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 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지원 약정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~ 2. (생략)	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되	3.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되	3. -----		

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담보농
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
정하는 방식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----- 종료되거나 수급자
사망 시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4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) ①

공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
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
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
같다.

1. 대법원 등 국가기관
2. 지방자치단체
3.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
무원연금공단
4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
연금공단
5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
기본법」에 따른 농림수산식
품교육문화정보원
6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
한국부동산원
7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
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
공단
8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
따른 근로복지공단
9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
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
자산관리공사

10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
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
융회사 등

11. 그 밖에 공사가 법 제10조제
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자료 및 정보를 보유한 기관

② 공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
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
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민연금법」, 「산업재해
보상보험법」, 「공무원연금
법」,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
법」에 따른 가입자 또는 적
용 대상자에 관한 급여 등의
자료 및 정보

2. 농지와 영농 현황에 관한 다
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

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
한 자료 및 정보

나.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
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

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
직접지불금 등록 및 지급
에 관한 자료 및 정보

다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
원부

라.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
국유재산이나 「공유재산
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
공유재산인 농지의 필지별
관리 현황

3. 부동산의 현황 및 가격에 관
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및 정보

가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
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지적공부·부동산종합공
부

나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
등기원인별 농지 명세와
공유지분 농지 명세 등

다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
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
시지가·표준지공시지가·
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실거래가

4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등록
사항의 말소현황, 주소 등

5. 「통계법」에 따른 농가경제
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

6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
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

7.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
관리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10
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
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

③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종합소
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일용
근로자의 근로소득

2.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취득세,
재산세, 자동차세

④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
청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
그 요청 자료 및 정보를 기관
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
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
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32